

‘간첩 만들기’의 전쟁정치

지배질서로서 유신체제

김동훈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사회학)

유신체제는 국제정치적 차원에서의 냉전질서의 이완이 그 질서에 의존했던 국가들을 위기에 빠뜨려, 역설적으로 오히려 반공주의, 국가주의, 민족주의를 강화시켜 정치체 내·외부 간의 경계 짓기를 극대화하고, 조작의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적을 만들어내고, 적의 존재를 통해 내부의 구성원들에게 충성을 요구했다. 적, 즉 공산주의를 악마화하면 할수록 내외부의 경계는 더욱 엄격해지고, ‘밖’의 사람들이 비인간화되어 가혹하게 처벌을 받으면 받을수록, 안의 사람들도 더욱더 노예적 상황에 처할 위험성이 있다. 권력이 국가위기를 공개적으로 천명했으나 그것을 뒷받침할 정도로 외부의 적이 가시화되지 않을 경우, 내부의 적이 의도적으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체제유지를 위해 국가 내에서 평소에 잠재적 적으로 규정되었던 사람들은 실질적인 적, 즉 간첩으로 ‘조작’되었다. ‘간첩 조작’과 ‘간첩 처형’, 그리고 온 국민적 ‘간첩 색출’ 작업은 서로가 연결되어 있으면서 서로를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극단적 국가주의, 공포의 조성은 인간의 내면성을 유린한다. 이런 사회에서 모든 사람은 스스로를 사상 검증의 대상으로 삼게 된다.

주요 용어: 10월 유신, 절멸체제, 적, 전쟁정치, 간첩만들기, 냉전

1. 머리말

전쟁 상황, 즉 ‘적’의 실재와 위협은 정치체(polity)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치체의 내적 통합을 강화시켜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지배세력은 전쟁이라는 위기상황을 지배체제를 공고화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기도 한다. 그런데 전쟁기의 ‘적’이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을 수도 있다. 즉, 전쟁기 지배세력은 정치체 통합과 체제 유지를 위해 외부 적의 위협을 과장할 수도 있고, 내부의 일탈자(deviant)를 적으로 간주한 다음 그들의 위협을 선전하면서 그들에게 과도할 정도로 엄격한 처벌을 가할 수도 있다. 일찍이 지멜(G. Simmel)은 적대감이 집단의 경계를 더욱 선명하게 해준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어떤 경우든지 전쟁기 정치체는 위기를 내부의 이데올로기, 정치, 법, 제도로 구체화하여 평상시의 사회가 그러하듯이 ‘적’을 색출, 처벌하는 과정을 통해 구성원들에게 “무엇이 일탈행위인지 정하고, 누가 공동체의 가해자인지 말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그 공동체의 경계를 설정하는 일을 반복한다”(Erikson, 2005: 13). 처벌되어야 할 일탈자, 즉 적의 규정과 처벌 과정은 그 정치체가 지켜야 할 질서 혹은 권위의 재확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지멜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체제 유지의 압박이 엄중할수록 일탈자에 대한 처벌이 가혹해질 것이고, 때로는 지배집단이 의도적으로 일탈자를 공공연히 지목하고, 공개적으로 처벌하거나, 더 심하게는 ‘위험인물’을 ‘적’으로 의도적으로 조작함으로써 질서 유지를 도모할 수도 있다. 모든 지배는 폭력을 내장하고 있으며, 피지배자의 죽음의 공포에 기초하고 있지만(조프스키, 2010: 20), 잠재적 적을 실재적 적으로 ‘조작’해서 처벌함으로써 체제를 유지하려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하는 이유는 반대세력을 공포에 몰아넣어 저항 의지를 좌절시키며 집권세력의 이해를 확고히 하고 권력을 안정화하려 하기 때문이다. 통상 정치공동체에서 가장 심각한 일탈자는 모반자 혹은 적의 편에 선 간첩(spy)이다. 이처럼 단순한 정치적 반대세력도 반역자 혹은 간첩으로 분류해서 공개적으로 적으로 간주하거나 심지어 이들을 ‘악마화’하고, 이들

간첩의 위협을 이유로 정치체를 공포분위기로 몰아넣는 등, 적 혹은 간첩과 양민을 명확하게 구별 짓는 작업은 부르디외(Bourdieu)가 강조한 상징 폭력(symbolic violence)보다는 물리적 폭력행사를 통한 지배에 가까운 것이다.¹⁾

적 혹은 간첩에게는 물리적인 폭력이 행사되는 동시에 정치체 내부의 ‘양민’들에게는 생존해 있다는 것도 다행으로 알리는 식의 위협이 암암리에 가해진다. ‘간첩 악마화하기’와 ‘간첩 조작하기’는 간첩으로 낙인찍히지 않으려는 대중들의 순응행동을 강제한다.

냉전체제(cold war)는 만성적인 전쟁체제다. 냉전도 전쟁이므로 국가가 주도하여 적으로 분류된 집단에 대해 만성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체제이며(Thompson et al, 1982: 264), 더 나아가 집단학살과 마찬가지로 적의 완전한 제거, 즉 적으로 분류된 집단과 정치공동체를 완전히 ‘절멸(annihilation)’시키고자 한 극단주의 체제였다(Hinton eds., 2002).²⁾ 냉전의 목표는 공산주의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며, 이 ‘전쟁’은 공산주의가 사라질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었다. 다른 전쟁과 마찬가지로 냉전 역시 적은 외부와 내부에 동시에 존재한다. 외부의 적은 소련이나 사회주의 진영이었고, 적에 대한 악성 루머가 떠돌면서(Robin, 2001) 내부의 적은 국가 내부의 공산주의 혹은 반공주의 반대세력 일반, 나아가 그들에게 협력하는 사람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다.³⁾ 냉전의 최전선이자 한국전쟁이라는 내전을 경험했던 한국은 전쟁 피해를 직접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지금까지 준전쟁 상황에 있다.

-
- 1) 부르디외가 말한 상징적인 것은 물질적인 것, 혹은 노골적인 것과 대비된다. 즉, 착취와 지배를 오인하여 그것을 받아들이는 실천적 행위까지 포함한다(Bourdieu, 1977: 171~197; Bourdieu and Wacquant, 1993: 167~168). 그러나 폭력기구가 지배의 전면에 부상할 경우 오인, 혹은 상징적인 요소는 부차적이 된다.
 - 2) 이 점에서 반공주의는 의사인종주의의 성격을 지닐 수 있다(김동춘, 2000: 366~376).
 - 3) 대만에서 비첩(匪諜)을 반도(叛徒) 혹은 반도와 결탁한 사람으로 분류한 것이나, 한국전쟁 직전 보도연맹 가입대상 혹은 이후 국가보안법의 이적죄 조항에서도 단순히 체제에 반대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협조한 사람도 적으로 분류되었다(曾薰慧·藏汝興, 2007: 204).

그래서 한국은 대만과 더불어 냉전적 극단주의가 가장 심각하게 지속된 곳이었다. 이 경우 체제유지는 외적 위기의 지속과 내부의 경제발전으로만 정당화될 수 있었는데, 국제체제가 변동하거나 내부의 축적체제가 위기에 빠지면 심각한 정당성의 결핍상태에 빠질 수 있다. 즉, 외부의 적의 위협을 빌미로 전쟁수행을 위한 이데올로기와 법, 제도를 만들어놓았는데, 만약 전쟁위협이 사라진다면 그러한 체제 정당화 논리가 도전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1972년 박정희의 비상계엄선포와 유신헌법 제정,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제정과 김일성 1인체제의 공고화가 그 전형적인 사례였다. 곧 국제적 긴장완화는 국내적 긴장강화라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

당시 남북통일은 유신체제 수립을 위한 공식적 이유였지만 그것은 명분에 불과한 것(홍석률, 2005)⁴⁾으로 판단된다. 유신체제의 성립에 대해서는 산업화의 위기와 저항세력의 등장 등 축적체제의 측면에서는 설명하는 시각(한상진, 1990)과 국내외의 정치적 위기가 맞물린 체제 재생산의 위기에 기인한다는 시각(김영순, 1988; 손호철, 1995: 144)이 있지만, 유신체제의 성격 규정에 대해서는 ‘관료적 권위주의’(한상진, 1990), ‘종속적 파시즘’(손호철, 1995), ‘헤게모니 없는 강권적 독재’(이병천, 2003), ‘대중참여와 열망에 기반한 폭력체제’(황병주, 2004), ‘강압이 전면화된 군대식 총력동원체제’(조희연, 2010) 등의 설명이 제시된 바 있다. 이러한 성격규정은 한국이 처한 구조적인 전쟁체제가 내외적인 위기에 맞물릴 때 어떻게 군사주의 지배질서로 전환되는지에 대해 과소평가하고 있다. 즉, 민주주의 절차와 헌정을 중단시킬 수 있는 ‘예외상태’의 선포로서 유신체제는 제3세계의 축적의 위기 속에 나타나는 국가개입주의와 군사독재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반대과를 절멸시키

4)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정권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내세운 논리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민족적 사명을 저버린 무책임한 정당과 그 정략의 희생물이 되어온 대의기구에 대해 누가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의 성취를 기대할 수 있겠으며... 우리의 헌법과 각종 법령 그리고 현 체제는 동서 양대 냉전시대에 만들어졌고 허물며 남북의 대화 같은 것은 전연 예상치도 못했던 시기에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국면에 처해서는 ..., 새로운 체제로의 일대 유신개혁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려는 적나라한 전쟁정치 측면이 있고, 이 시기 간첩조작은 그러한 지배질서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준다.

유신 시절의 ‘간첩 만들기’는 냉전체제하 한국 지배세력의 만성적 폭력동원 지배체제 유지방식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민주주의 공고화’ 담론은 민주화 이후에도 지속되는 국가의 계속되는 폭력행사와 법치의 위반을 만족스럽게 설명하지 못한다. 그리고 민주화 이후 대중들의 복종의 논리와 기제, 특히 그들이 여전히 일상적인 사회참여나 정당가입 등 정치참여를 주저하는 행동들 역시 의문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유신 이후 30년 동안이 지난 지금까지 정치권과 언론에서 동원하는 ‘빨갱이’ 담론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국가 내의 적에 대한 환기와 상징화는 어떻게 상대적 평화 시기에도 ‘전쟁정치’가 연장될 수 있으며(김동춘, 2011),⁵⁾ 이 전쟁정치하에서 사람들이 상호검열과 자기 검열의 내면성 통제를 통해 ‘밖’의 존재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단속하는지는 유신체제의 ‘간첩 만들기’ 작업이 유신시절을 지난 이후에도 계속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 국민을 향한 전쟁 선포, ‘법에 의한 전제’로서 유신체제

1972년 제정된 유신헌법의 부칙에 “이 헌법의 제정과정에 대해 제소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 유신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10월 유신이나 이후의 긴급조치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노골적 폭력 체제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유신헌법은 국민주권, 권력분

5) 국가보안법은 일반적인 반국가행위에 대한 처벌법인 반면, 유신시절에 주로 적용된 반공법은 공산계열의 활동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자의 처벌에 관한 법이므로 논리적으로 한국에서 반국가활동과 공산주의 활동은 별개의 것이지만, 북한과 적대관계에 놓인 한국의 사정에서 ‘적’, 즉 반국가활동은 사실상 공산주의 활동과 동의어였다. 그래서 간첩 조작과 빨갱이 조작은 사실상 같은 것이지만, 빨갱이로 규정하는 것이 정치, 사회적인 것이라면 간첩은 명백히 법적인 처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립, 기본권 존중 등 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한 법이었다. 대통령은 국회를 언제나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으며,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의 성격을 상실, 법관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은 완전히 무시되었다. 중앙정보부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위에 군림하는 최고의 권력기관이었으며, 야당과 재야 정치적 반대자들은 물론 여당 인사들에 대해서도 고문과 테러가 만연했다.⁶⁾ 시, 군, 읍, 면, 동 이장을 주민 동원과 주민 감시하는 요원으로 만들었으며, 학원을 병영화하고 대학의 교수를 비롯한 행정 직원을 학생을 사찰하는 요원의 역할도 하게 만들었다. 지역에서는 관변조직이, 학교에서는 학도호국단 등 관제 학생조직이 움직였다. 기업에서는 노조 활동 자체가 사실상 불법화되었고, 공장 새마을 운동은 철저하게 위로부터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 유신체제는 1971년까지 어느 정도 유지되어 오던 절차적 민주주의, 정당정치에 종지부를 찍었다.

비상계엄하에서 유신헌법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되었고, 91.5% 지지라는 놀라운 찬성률로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당시 이 국민투표는 실제 유신헌법에 대한 반대의견의 피력이나 비판 자체가 철저히 봉쇄되고 야당의 참관이 차단된 공포 상태에서 투표가 이루어진 것이다. 최대의 정적이었던 김대중과 가까운 야당 국회의원들은 중앙정보부에 체포되어 고문을 당했다.⁷⁾ 모든 선거 과정은 중앙정보부가 각 분실에 하달한 95% 득표 공작 명령하에서 진행되었다(김형욱·박사월, 1995: 141).

유신헌법 통과 후 모든 언론은 검열을 받았다. 중앙정보부 요원들은 신문에 아예 상주하여 보도 가능한 뉴스와 그렇지 않은 뉴스를 지정해서 나누었고, 심지어는 헤드라인의 크기나 특정기사의 돋움처리까지 세세하게 지

-
- 6) 여당 인사들에 대한 탄압으로는 공화당 내의 항명파동이 대표적이다. 1971년 오치성 장관 해임 통과과정에서의 4인체제의 항명에 대해 당사자들을 가혹하게 고문했다. 이 항명파동으로 인해 여당 내에서 찬반 토론은 일체 사라졌다.
- 7) 이장, 반장을 통해 반대표가 나올 경우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것을 은근히 협박했고, 심지어 학교 교사들도 주민들의 성분을 일일이 조사하여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확인했다(노근노, 1986: 133).

시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은 광고주들의 압박으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중앙정보부가 요구하는 인사조치, 즉 문제 직원들을 해임했다. 이후 중앙정보부는 이들의 재취업까지 방해했다. 초중고 교장들을 모아서 “10월 유신의 선봉이 되자”고 결의를 다졌다. 서울시 공무원 2만여 명은 10월 유신이라는 리본을 달고 다녔고, 전국에서 관제 데모가 열렸다. 중앙정보부는 각종 노사분규에도 직접 개입했다. 동일방직의 ‘똥물사건’ 등도 중앙정보부의 적극 개입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후 중앙정보부, 보안사, 경찰은 블랙리스트를 작성, 공유하면서 민주노조운동에 가담한 노동자들의 재취업을 막았다.

유신헌법에 의해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의원들은 형식상 국민들에 의해 선출되었지만 정부는 공무원과 경찰을 동원하여 후보 등록과정에서부터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이 출마하는 것을 차단했으며, 그 결과 대의원은 거의 친정부 인사로 구성될 수밖에 없었다.

10월 유신 이후 입법부의 1/3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정회 국회의원으로 채워졌다. 유정회 국회의원들은 대통령 비서실의 추천과 박정희의 추인으로 결정되었는데 지식인들을 포섭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활용되었다. 유정회 국회의원이 된 대학교수는 제1기 11명, 제2기 21명, 제3기 21명이었고 유신정책심의회 조사연구 교수는 모두 70명이었다. 유신체제하 국회 운영은 연중 임시국회 1회, 정기국회 1회 정도에 불과했는데 이는 국회를 열어 놓고 떠드는 것보다 조용하게 지내는 것이 효율적이었기 때문이다. 유정회는 국회 정치에 대한 박정희 불신을 현실화한 기구였으며, “국회가 정쟁의 장이 아닌 능률적인 의안처리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방침하에 야당의 대정부 비판을 정쟁으로 규정하고 적극 저지했다(전재호, 2005: 151).

대법원의 경우 유신헌법하에서 대법원 판사들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으며 그동안 대법원장이 갖고 있던 법관 임면권을 대통령에게 이전했다. 또한 헌법위원회를 설치하여 대법원이 갖고 있던 위헌법률심사권뿐만 아니라 탄핵결정권, 위헌정당 해산권을 부여했고 대통령이 헌법위원회의 9인 중 3인을 선임하는 동시에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

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임명하게 했다. 이렇게 사법부는 대통령에게 완전히 종속되었다. 대통령의 의중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은 재임용에서 탈락시켰고, 탈락시킨 후에는 변호사 개업도 어렵게 만듦으로써 정권 반대 판결의 가능성은 차단했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은 서울 형사지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를 통해 시국 사건의 판결을 ‘조정’했다. 사실상 모든 시국사건 판결에 중앙정보부가 개입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박정희 정권은 국민들을 가장 말단 행정조직인 반 단위로 조직한 다음 매월 말일을 반상회의 날로 정해서 전국적으로 일제히 반상회가 열리도록 했다. 이것은 일제 말의 국민반, 애국반 등의 조직이 거의 그대로 부활한 것이었다. 당시 농촌에는 수많은 단체가 조직되어 있었었는데, 이 모든 것은 행정기관의 직접 통제를 받았으며 단체의 장은 말단 행정기관의 끄나풀 역할을 했다. 농민운동가 노금노는 1973년 봄 자신이 맡고 있었던 직책을 열거했는데, 마을금고 회계, 50여 호를 대표하는 수반장, 새마을 사업 추진위원, 새마을 지도자, 마을 협동 회장 등이었으며 그 외에도 농협 총대, 엽연초 조합 총대, 농지위원, 지도소 자원 지도자, 4H 독농가, 시범농가, 산림계장, 이장, 민방위 대장, 예비군 소대장, 절미저축부인회, 명예반장, 명예 파출소장, 정당의 책임자, 반공연맹 책임자 등의 직책들이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걸핏하면 무슨 교육이다 동원해가지고 높은 양반들 일장 훈시하는데 댓가지 숫자 채워주는 것이 고작이고, 새마을 회관에 가서는 ‘때려잡자 김일성’, ‘쳐부수자 공산당’을 외치고, 새마을 사업 역시 마을민의 자발적 필요와는 무관하게 협조하지 않으면 찍히는 마을이 되기 때문에 ‘국가시책’에 충실히 따를 수밖에 없었다(노금노, 1986: 149)고 기억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전국에서 동일하게 진행되던 일이었다.

박정희의 유신체제는 바이마르 공화국 이후 히틀러의 통치, 다이쇼오(大正) 데모크라시 이후 일본의 군벌정치의 쿠데타 기도와 유사한 것이었다. 국가 지상주의, 군의 정치적 중립 원칙 무시, 판료조직에서 절대적 규율과 철저한 상명하복 원칙, 반대하는 국민탄압과 인명경시 등이 그 내용이다(작크 드라슈, 1987; 강창성, 1991).

일각에서는 이러한 지배를 대중독재라고 지칭하기도 하지만, 대중의 참여가 주로 동원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대중적 극우운동이 존재했던 독일과 이탈리아의 파시즘과는 성격을 달리한다.⁸⁾ 1970년대라는 세계사적 시간의 조건 때문에 유신체제가 과거의 일제 말 총동원체제나 히틀러의 파시즘보다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외향을 갖추었던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박정희가 일당 독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선거와 의회정치를 완전 폐지하지는 않았고, 사법부 기능을 정지시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신체제는 히틀러의 파시즘이나 일제 말 총력전 체제와 달리 자유 민주주의의 외피를 견지했다. 그러나 절차적 민주주의 사실상의 정지 상태, 삼권분립 원칙의 노골적 위반, **법의 이름을 빈** 사실상의 테러 통치, 엄격한 국민 감시체제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유신체제는 일제 말의 식민지 파시즘의 적자(嫡子)이며, 같은 시기 칠레나 스페인의 군사파시즘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었다. 대통령만이 비상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었고, 중앙정보부 등 공안기관이 모든 국가기관 위에서 있었으며,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무차별적 연맹 테러와 고문, 재판 없이 현행범이 아닌 사람을 구속시킬 수 있었던 사실상의 법의 정지 상태, 혹은 ‘법에 의한 전제(*autocratic rule by law*)’(베로스, 2005: 327)였다고 볼 수 있는데, 긴급조치 1~9호는 유신체제의 성격을 가장 잘 집약해주고 있다.

‘법의 이름을 빈’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요?

8) 유신헌법 통과에 대중들이 지지를 보냈고, 박정희가 추구한 안보/성장주의 연합세력으로 민중이 참가했으며, 당시의 민주화운동에 대중들이 거의 참가하지 않아서 그렇게 분석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사실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우선 대중들은 독재정권과 동등한 혹은 하위의 파트너가 아니었기 때문에 같은 수준의 책임주체도 아니었다. 당시 한국 대중들은 이 지배체제의 구축과 운영과정에서 초대된 적이 없고, 또 발언권을 가진 적도 없으며, 또 그 체제가 대중들의 경제적 이익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작동된 적도 없다. 박정희 성장 이데올로기가 이들의 탈빈곤의 열망을 사로잡은 것은 사실이었으나, 이들이 조직적으로 대표성을 갖고서 체제 유지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 일부 열성적 새마을 지도자의 참여를 부인할 수는 없지만, 새마을 운동이 강제보다는 동의에 기초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조희연은 박정희 정권이 동의에 기초해 있었다는 헤게모니 유지의 관점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으나 마찬가지로 강압 일면도로 볼 수 없다고 말한다(조희연, 2010).

그것은 법의 이름을 빌린 사실상의 폭력이었다.

유신체제는 유럽 파시즘의 여러 특징을 공유하고 있지만 조선조의 군주제도와 전근대적 권위주의, 일제 말의 천황제 군국주의, 대만의 총통제, 북한의 김일성 유일체제 등과 마찬가지로 비트포겔(비트포겔, 1981)이 말한 동양적 전제주의(Oriental Despotism), 즉 강력한 국가기구, 국가와 종교의 일치, 지도자에 대한 개인숭배, 사상적 단일성 강요, 시민사회 내의 수평적 자율적 조직의 일체 불허, 가족적 결속력 강조, 개인주의의 미발전 등의 특징도 지니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의 메이지 유신 이후의 국가주의가 유교적 충(忠)의 논리와 더불어 독일에서 수입한 입헌주의, 국가주의에 모두 사상적 기원을 두고 있으므로 박정희의 유신의 이념 역시 그가 학생 청년 시절 익숙하게 접했던 일제 말 황제하의 국가주의와 그것과 사상적 기원을 같이하는 독일 파시즘에서 왔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극우 이데올로기이자 지배체제로서 파시즘 혹은 유사 파시즘은 시기와 나라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띤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안보 위기, 민주주의의 좌초, 경제위기와 중간층 몰락, 도덕적 진공 등의 배경과 맥락에서 나타난다(팩스틴, 2004: 463~481). 그것은 국가 혹은 공권력에 대한 일방적 충성요구, 폭력기구가 지배체제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점, 지도자에 대한 종교적 숭배 등의 내용을 특징으로 한다.

3. ‘간첩 색출하기’, ‘간첩 만들기’로서 유신체제

1) 공안 통치와 ‘간첩 만들기’

앞서 언급한 것처럼 1972년 10월 유신은 ‘전쟁정치’라 부른 권력행사 혹은 지배방식이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난 시기였다. 박정희는 “조국의 현실이 백척간두에 처해 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오늘의 상황은 준전시 상태가 아니라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규정했고(대통령비서실, 1975: 26,

‘법의 이름을 빈’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요?

183), 이러한 준전시라는 상황 규정 아래 적과의 전쟁을 위해 국가의 모든 구성원을 총동원하고 내부의 적으로 지목된 집단이나 개인을 외부의 적과 사실상 동일시하는 전쟁정치의 지배체제 특징을 보였다. 이 경우 체제의 안과 밖을 구분하고 ‘밖’, 즉 적으로 분류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억압과 통제, **법의 이름을 빈** 처형(사법살인)을 가하기도 하는데, 이들 일탈자, 즉 ‘밖’의 존재에 대해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다. 통상 전쟁정치는 군대 대신에 공안기구가 모든 국내정치를 좌우하고 법은 껍데기로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1961년 5·16군사쿠데타 이후 곧바로 결성된 중앙정보부는 대통령의 직접 지휘를 받는 ‘국가 내의 국가’, 정부 위의 정부로서 역할을 했지만, 1972년 유신 이후 그 정도는 더욱 심해져서 사실상 모든 정치, 사법, 학원, 언론, 노동 영역에까지 중앙정보부 활동은 확대되어, 모든 정부기관과 지방행정기구를 압도하는 최고의 권력기관으로서 역할을 했다. 중앙정보부는 국군보안사와 더불어 거대한 ‘그림자 정부’였고, 이 두 기관은 일제시기 독립운동가들을 잡아서 고문하던 악명 높은 일제 특별고등경찰(특고, 特高)의 후예였다. 1971년 사법과동 이후부터 중앙정보부는 ‘조정’의 이름으로 판결에 개입했는데, 특히 긴급조치 위반, 반공법 위반 사건 등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개입했다. 긴급조치 2호 10항은 “중앙정보부장은 비상군법회의의 관할사건의 정보, 수사 보안업무를 조정 감독한다”라고 하여 중앙정보부가 긴급조치 관련 재판에 개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았다. 검찰 수사 과정에도 입회를 해서 피의자가 고문에 의한 진술을 부인하면 중앙정보부에 다시 보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러한 관행은 1980년대까지 계속되었다.

또한 중앙정보부는 언론과 노동 분야에도 깊이 관여했다. 박정희는 언론 담당 조정반을 중앙정보부 내에 설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김형욱·박사월, 1995: 288). 동일방직 사건 등 1970년대 노동 사건에는 어김없이 중앙정보부가 개입했다. 당시 중앙정보부 요원은 회사나 산별노조 사무실에 거의 상주했고, 경찰은 중앙정보부의 심부름을 하는 존재에 불과했다(진실화해위원

회, 2009). 모든 보고서가 청와대에 중앙정보부에 직접 올라갔고, 그들에 의해 정치적, 정책적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중앙정보부와 청와대는 동일 방식 등 노조관련 해고 노동자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배포함으로써 노동운동 관련자들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배제시키는 작업에도 직접 개입했다. ‘비상사태’가 선포된 상태에서는(는) 사회영역 특히 언론이나 노동까지도 공안 개입 영역이 되어 단순한 노조 결성이나 노동쟁의도 공안 사안으로 간주된다. 모든 구성원이 ‘적과 나’로 이분화되는 사회에서 단순한 생존권을 위한 노동자와 농민의 요구도 간첩행동이 될 수 있음은 물론, 이런 상황에서는 좀도둑조차 비첩(匪諜)이 될 수 있다(曾薰慧·藏汝興, 2007)는 이야기이다. 1971년 광주대단지 사건 당시 체포된 사람들이나 이후의 노동쟁의, 농민의 저항도 모두 간첩 잡는 것을 임무로 하는 ‘공안’부서 담당사건으로 취급되었으며 주도자들은 빨갱이로 몰렸다.⁹⁾

이러한 ‘공안 사범’에 대한 재판과 처벌은 당사자뿐 아니라, 그것을 목격하거나 보도를 통해 보고 듣는 국민들을 규율하는 효과를 가졌다. 즉, ‘밖’의 존재, 간첩에 대한 공개적 범주화와 낙인, 그리고 ‘밖’의 존재에 대한 철저한 비인간화와 공공연한 테러의 양상을 지닌 가혹한 처벌은 ‘안’의 사람들을 공포로 질리게 하여 복종을 유도하는 효과를 가졌다. 안과 밖의 정치적 경계선이 명확해지면 ‘밖’의 존재에 대해서는 책임감과 동정심을 느낄 필요가 없어진다. ‘밖’의 사람들, 즉 간첩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지수’라는 방법을 통해, ‘귀순’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안’, 즉 정치공동체 내로 들어오도록 강요당한다.

국가 내외 위기에 직면한 권력은 적에 대해 극도의 공포감을 갖게 되고, 그것은 내부의 적, 잠재적 적에 대한 공공연한 색출 작업을 불러온다. 그런데 밖의 적의 위협이 줄어들면, 내부의 적을 밖의 적만큼이나 위협한 존재로 격상시켜 위기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1969년 이후 북한의

9) 함평 고구마 사건으로 유명한 서경원의 경우 문제를 제기하자 군청직원, 면직원, 정보과 형사, 관변단체가 총동원되어 이들을 불순세력으로 몰았다고 한다(서경원, 2003).

간첩 남파가 줄어들면서 남파간첩들이 정권이 원하는 대로 검거되지 않았다. 그러자 박정희 정권은 간첩을 ‘정책적으로’ 양산하기 시작했다. 박정희 정권은 정치적으로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간첩으로 조작한 다음, 그들에게 처벌을 가해서 국민적 공포를 조장하며, 간첩의 위험을 온 사회에 일상적으로 유포하고 또 그것을 기정사실로 만들어 모든 사회구성원을 상호 감시하게 만드는 일까지 저지르게 된다.

공안기관이 멀쩡한 사람들이나 약간이라도 의심되는 행동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정치공동체의 적’, 혹은 범죄자로 조작해 내고 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국가 범죄행위다. 국가가 단순히 ‘적’을 적발하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적을 필요에 따라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폭력성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행태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유신시절과 이후 1980년대 한국에서 그런 일은 수없이 발생했다. 경찰, 중앙정보부(국정원), 보안사 등은 자신들이 심어놓은 정보(망)원의 밀고를 받거나, 또 의심되는 사람을 고문하거나, 또는 약점이 있는 사람을 잡아서 그와 뒷거래를 해서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내는 방법을 사용해 왔다. 즉, 약간 ‘냄새가 나는’ 사람의 동창, 친구, 친척, 과거 안면 있는 사람 등 지푸라기라도 하나 있으면 이들을 연결하여 고문 조작을 통해 ‘작품’을 그려내고, 그림이 될 것 같으면 마치 “무슨 중대한 것을 발굴해낸 것처럼,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얼굴에 화색이 도는 **낮 빛**을 하는”(김근태, 1988: 79) 공안기관의 ‘빨갱이’ 제조, 간첩 제조, 범죄자 제조는 해방 이후부터 한국의 공권력이 자행한 일이었다.

‘낮빛’이 아닌지요?

이러한 조작에 의한 간첩 만들기는 일제가 종종 사용했던 방법이었다. 일제 식민지 통치하에서 훈련을 받은 간부들에 의해 만들어진 한국 경찰과 공안기구는 이승만 정부 시기부터 인위적으로 좌익 혹은 간첩을 조작하여 반대세력을 위축시키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작업을 하기도 했다. 이승만 정권하의 국회 프락치 사건, 조봉암 사건 등이 대표적이었다. 그러나 유신체제 이후 1987년까지 이와 같은 조작이 가장 만연했다. 박정희 정권 이후에는 사회주의 활동이 합법화되어 있음은 물론 북한과의 내왕의 기

회가 있었던 일본 거주 동포, 북한에 납치되어 북한으로부터 사상 교양 교육을 받는 적이 있었던 납북어부, 해방 정국이나 4.19 직후 민족주의·사회주의 활동 경력을 가진 인사들, 서독에 유학하여 북한이나 사회주의 사상에 노출될 기회가 있었던 유학생들이나 유럽거주 주민들, 한국전쟁기 부역혐의가 있거나 의용군에 징집된 경력이 있던 사람들이 주로 대상이 되었다.

유신체제하 최대의 조작 사건은 이른바 ‘인혁당 사건(인민혁명당 사건)’과 ‘민청학련 사건(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 국가변란기도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이미 사건 직후부터 박정희 정권이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고 민주화 운동세력을 위축시키기 위해 관련자들을 고문해서 ‘만들어낸’ 대표적인 조작사건으로 거론되어왔는데 국정원 진실위원회의 진실규명과 법원의 판결로 최종적으로 그 조작사실이 확인되었다. 1974년 4월 25일 중앙정보부는 민청학련이 조총련, 인혁당과 결탁하여 국가변란을 기도했다고 발표하면서 1,034명을 검거하여 57명을 구속했고, 인혁당 재건위 관계자 27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박정희 정권은 학생데모를 국가변란을 기도한 반국가단체 사건으로 확대 발표했다. 1975년 4월 8일, 인혁당 및 민청학련 관련자 8명에게는 사형이 선고되고 8명은 무기징역, 6명은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후 18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8명을 사형시켰다.

그러나 국정원 진실위의 조사에 의하면 민청학련이라는 조직은 반정부 데모를 위한 투쟁기구에 불과했으며 유인물에 언급된 것에 불과했지 실제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지 않았으며, 중앙정보부에서 조작한 것이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국정원 진실위원회, 2005: 159). 그 성격 역시 역할분담을 통해 동시다발 데모를 하지는 조직이었지, 당시의 정부 발표, 즉 ‘폭력으로 정부를 전복하여 공산국가 건설을 기도한 반국가단체’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즉, 유신정권 타도를 목표로 한 학생데모는 ‘노농정권 수립을 통한 사회주의 정권 건설’로 조작되었다. 당시 중앙정보부의 상황보고에 의하면 중앙정보부는 이적성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했으며 대통령 담화내용과 수사결과가 일치하도록 전형적인 짜맞추기 수사를 진행했다(국정원 진실위원회, 2005: 179).¹⁰⁾ 인혁당 재건위 사건 역시 관련자들이 개인적으

로 사회주의 사상을 견지했을 수도 있고, 그중에는 북한방송을 청취한 사람도 있어서 일부가 북한에 대해 우호적인 생각을 가졌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들이 구체적인 결사를 조직하여 반체제 활동을 하거나 민청학련을 배후 조종했다는 증거가 없었다. 일부 의심받을 행동을 이유로 반공법 저촉 여부는 물을 수는 있었겠지만 그것으로 사형까지 당할 이유는 없는 것이며, 관련자들에게 강압적인 수단(고문)을 사용해서 조서를 작성한 다음,¹¹⁾ 거대한 공안사건을 조작하고 관련자들을 전격적으로 처형한 것은 일종의 국가범죄였다.

‘민청학련’, ‘인혁당’ 사건 외에 대표적인 ‘간첩 만들기’는 유럽거점 간첩으로 이름 붙인 김규남 사건, 최종길 교수 사건 등이 있다. 그러나 제일동포, 남북어부 등이 가장 많다. 휴전선 접경지역에서 생계를 위해 고기잡이를 하다가 북한에 피랍되고, 또 가족이 있는 남으로 내려왔던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희생양이었다. 박정희 정권은 어부들이 남한 해상에서 북한경비정에 피랍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귀환하면 수십 일 동안 구타, 고문 등을 가하여 북한해상에서 월선조업을 했다는 허위자백을 받아내 처벌했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당시 중앙정보부는 ‘혐의 없는 자라도 입건하라’는 지시를 경찰에 하달했고, 검찰은 법원에 사건을 기소하면서 ‘국가 시책에 의한 사건’이라고 기재하여 기소했다. 정보과 형사들은 자신들이

10) 그리고 ‘인혁당’ 관계자인 도예중, 서도원 등이 여정남을 포섭해 전국적인 학생봉기를 배후에서 지원하려 했다는 수사 발표 역시, 여정남이 서울의 학생운동 지도자들과 접촉한 것은 사실이나, ‘민청학련’ 지도부를 조종, 지도할 위치에 있지 않았으며, 학생들이 이들 ‘인혁당’ 관계 인사들과 접촉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조총련과의 연계 역시 없었다는 사실 등을 통해 전형적인 조작 사건임이 드러났다.

11) 사형당한 하재완은 고문으로 탈장이 되었으며, 폐종양에 시달렸고, 전기고문을 받아서 경련을 일으켰다고 한다. 이수병 등은 혼절이 되어 업혀 나왔다고 한다(국정원 진실위, 2005: 256). 이수병은 상고이유서에서 인혁당 재건모의 등을 한 바 없고, 다방에 모여 국가변란을 모의한다는 비상식적인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다. 물론 사상적으로도 자신은 자유와 평화를 갈구하는 민주주의라고 말한다(천주교 인권위원회, 발행연도미상: 91~99).

원하는 대로 진술하지 않으면 뺨을 때리거나 군화발로 걷어차기 예사였고, “다른 사람은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고 하는데 너는 왜 부인하느냐”고 다그친 다음, “원하는 답”을 얻어냈으며,¹²⁾ 원하는 답이 안 나오면 답이 나올 때까지 고문을 가했다고 한다.

이후 박정희 정권은 정치적 필요에 의해 납북귀환어부들을 수시로 간첩으로 조작하여 처벌했다. 당시 중앙정보부 등 공안기관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첫째, 납북귀환어부는 대부분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거나 겨우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로 자기 방어능력이 없었던 사람들이었다. 둘째, 납북귀환어부는 피랍되어 북한에 머물렀던 기간에 사회주의와 북한체제의 우월성 등을 교육받았고, 북한의 우수한 산업시설과 관광지 등을 견학했고, 남한에 내려가면 북한의 우월성을 지인들에게 홍보하라는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다. 따라서 납북어부는 조금만 ‘가공’하면 ‘간첩’으로 만들 수 있는 ‘반제품’이나 마찬가지로였고 그들은 정권에게는 ‘황금어장’이었다.¹³⁾

이 인혁당, 납북어부, 재일동포 등 조작 간첩 사건의 피의자들은 그런 조직이 있다는 사실을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당국에 불러가서 처음 들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1970년대 중앙정보부는 멀쩡한 사람을 빨갱이로 제조하는 생산 공장으로 불리기도 했다. 1980년대는 치안본부 대공분실, 보안사 등이 경쟁적으로 그 역할을 했다. 1970년대 지학순 주교와 김지하의 사전 양심선언은 바로 구속된 이후 심한 고문을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고문에 의해 진실이 아닌 이야기를 해서 조작사건이 만들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내가 하는 발언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으니 미리 진실을 고백한다는 취지였다.

이 간첩 조작은 공안기관 담당자의 출세 욕구의 산물이기도 하고, 때로는

12) 태영호 납북사건 신청인 강대광 진실(진실화해위원회, 2008: http://www.jinsil.go.kr/appdealing/databoard/app_list.asp).

13) “간첩조작사건, 왜 어부가 단골 대상이었을까,” 《오마이뉴스》, 2011.1.19.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11138&PAGE_CD).

경찰, 중앙정보부, 보안사 등 공안기관끼리의 실적 경쟁의 산물이기도 하다.¹⁴⁾ ‘간첩 만들기’는 곧 모든 국민들을 ‘간첩 아닌 사람’으로 처신하도록 만드는 과정, 즉 정치공동체의 테두리 치기, 충성스러운 국민 만들기 과정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행여나 간첩의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일체의 정권 비판을 하지 않고 권력에 복종을 한다. 즉, 간첩조작의 실제 효과는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의 복종 유도다. 이러한 체제하에서는 누구나 상호 감독을 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스스로 자신의 발언과 행동에 대해 자기 검열을 해야 한다(曾薰慧·藏汝興, 2007: 247). 즉, 간첩의 위협이 공공연하게 거론되면 ‘안’의 사람들은 자기 내면성까지 스스로 통제하게 된다. ‘밖’의 존재에 대한 폭력행사와 처벌은 가장 강력한 설득력 있는 언어로 다가와(조프스키, 2010: 27), 안에 사람들은 아무런 질문도 하기를 포기한 채 자신의 말과 행동까지 통제하게 된다. 간첩 만들기과 동시에 진행되는 ‘국민 만들기’는 ‘정화된 국민’, 즉 사상적으로 균질적이고 복종적이며 선거 외에는 일체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국민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 특히 전향을 거부한 장기는 ‘현저한 위협’을 가진 인물이 되어 무한한 기간 동안 구금당해야 할 존재였다(서준식, 1989: 6). 결국 이 간첩 만들기는 이미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구성원도 더 복종하게 만드는 정치공학이었다.

2) 색출과 ‘절멸’의 담론, 법, 실천

간첩 색출은 이제 공안기관만의 임무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과제가 된다. 거듭되는 간첩사건 발표, 온 사회에 내건 간첩신고 슬로건은 국민들의 가시

14) 1980년대에 들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보안사는 안기부를 압도하기 위해 재일동포라는 새로운 ‘황금어장’에 주목하고 수많은 재일동포들을 간첩으로 ‘제조’했다. 1970년대 말에는 과거에 약간이라도 혐의가 있거나 반정부 데모를 시도했다는 등의 일련의 꼬투리를 잡아서 그것을 확대, 과장했다면 1980년대는 아예 노골적인 공작 차원에서 없던 일까지 조작하는 일도 있었다(한인섭·홍성우, 2011: 391).

권에 나타난다. 공공장소, 학교 교정, 공공계시판, 도로 간판 등에는 바로 간첩 색출의 표어나 포스터가 나붙어서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을 압박했다. “침투간첩 찾아내어 적화야육 분쇄하자”, “온 국민의 신고정신 불순책 동 막아내자”, “간첩은 휴식 없다. 내가 먼저 말조심” 등의 구호는 바로 이웃이나 심지어는 가족까지 간첩이 아닌지 살펴보자는 상호 감시의 구호였다. 또한 “옆집에 온 손님 간첩인가 살펴보자”라는 표어가 온 나라의 마을마다 담벼락 등에 게시되기도 했는데 옆집에 온 손님도 간첩일 수 있고, 선량한 사람도 위장간첩일 수 있다는 규정은 간첩은 어느 곳에서 모든 곳에서 다 있는 존재라는 의미였다(曾薰慧·藏汝興, 2007). 나아가 이웃도 간첩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는 언론보도와 반사회 등의 모임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정 간첩을 검거했다고 발표하여 국민들이 확신을 갖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었다. 즉, 공안당국의 간첩 조작과 대중들의 간첩 신고하기 압박은 서로를 강화시키면서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일상에서의 간첩신고 독려’를 이토록 강조하는 것은, 소극적으로 사회적 이탈자나 적에 대해 당국이 수사하거나 체포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민이 직접 나서 잠재적 적을 지목하고 처벌하도록 하여 정치체의 안과 밖의 경계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런 작업을 통해 집단의 정체성, 적과 우리의 테두리 치기 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Erickson, 2005: 13).

간첩 신고의 압박과 강요가 사람들로 하여금 간첩으로 지목되지 않도록 몸조심하게 만들지만, 언론을 완전히 통제하는 독재체제라고 하더라도 일 상에서 정부비판, 대통령 비판까지 완전히 감시 통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술김에 혹은 친구 간에 정권 욕을 하거나 세간에 떠도는 유연비어를 전달하거나, 학원 탄압, 고문 사실 등이 있었다는 논의가 은밀히 나올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잡혀가서 형을 사는 일이 비밀비재했다.¹⁵⁾

15) 진실화해위원회의 『긴급조치 판결문 분석 보고서』, 참조(진실화해위원회, 2006, 『2006년도 하반기 조사보고서』, 279~441).

유신시설 긴급조치 위반사건의 상당수는 ‘유언비어 유포죄’였는데, 그들 대부분은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신고한 것들이다. 납북 어부들의 조작간첩 사건 상당수도 이들 어부들이 귀환한 이후 동네나 술집에서 무심코 뱉은 발언에 의해 만들어진 경우가 많았다.

긴급조치 1호에서 9호까지의 모든 내용 중 기존의 조항을 집대성한 9호는 해제될 때까지 약 4년 7개월 동안 적용되었는데, 반유신을 곧 반국가, 즉 간첩과 동일시한 대표적인 규율기제였다. 즉, “유신헌법에 대한 부정, 반대, 왜곡, 비방, 개정 및 폐기 주장, 청원, 선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었으며 이 조치에 의한 명령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명령이 법의 기능을 했으며, 단순한 정권 비판만도 체제비판으로 간주될 수 있었다.

정치체 내에서 적과 나의 구분이 극단화되면 반대세력 혹은 정치적 ‘일탈자’를 정치적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면 신체적으로 ‘절멸’시켜도 무방한 일로 간주된다. 군사독재 시절 한국에서 간첩은 비존재, 즉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거되어도 좋은 존재로 간주된다. 과거 제국주의 침략자들에게는 원주민 저항세력이, 독일 파시즘에게는 사회적 소수자나 유대인들이 그 대상이었다면 냉전체제하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이 바로 절멸의 대상이었다.

나치 이전과 나치 초기의 독일, 그리고 천황제 군국주의하의 일본의 공통점은 사회의 의학화, 즉 위생학적 비유를 사회에 적용한 점이었다. 성매매 여성, 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동성애자 등 일탈자들은 사회적 건강을 더럽히는 존재, 즉 소독되어야 할 존재로 간주되었다. 이들 체제에서는 사회를 몸으로 비유한 다음, 이들 ‘비정상인’들을 사회를 병들게 하는 병균으로 간주했는데, 그래서 이들이 독일에서 먼저 학살의 대상이 되었다. 유대인 역시 인종주의적 위생학의 관점에서 소독되어야 할 병균적 존재로 치부했으며, 그것이 이들에 대한 대량학살을 정당화한 논리였다. 실제 독일은 물을 끓여 먹거나 침실에 병균 오염을 막기 위해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는 등 온 사회 영역에서 청결 캠페인을 벌였는데, 그것은 바로 군국주의 일본에서도 그대로 실천되었다. 생활상의 위생학은 사회적 실천으로 연결되었다.

인종주의(racism)와 마찬가지로 반공주의도 위생학적 개념에 기초해서 죄악을 절멸의 대상으로 간주했다. 처칠(Churchill)은 그러한 위생학적 비유를 한 원조격인 인물이었다고, 반공주의 극성기에 미국의 로스토우(Rostow)도 이러한 입장을 견지했다(후지이 다케시, 2011: 24). 1983년 이른바 ‘더러운 전쟁’ 시기 아르헨티나에서 반정부 인사들이 낳은 어린이들을 납치한 사건도 이러한 죄악 제거를 위한 ‘절멸담론’과 실천의 결과였다. 즉, 죄악의 아이들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그들로부터 분리시키자는 것이 당시 독재정권의 어린이 납치의 배경이었다. 박정희도 종종 공산주의를 바로 위생학적 비유를 사용해서 설명했는데, 공산주의는 병균과 같은 존재이므로 소독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다. 일단 공산주의가 ‘병균’으로 인정되면 그들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행사나 살해까지도 용인된다. 수감된 비전향자들에 대한 폭력적인 전향공작, 출옥한 사람들을 사회안전법으로 영구 구금한 조치가 대표적인 것이었다.

1975년 유신시절 제정된 사회안전법은 절멸의 논리를 법제화한 대표적인 예이다. 유신헌법상의 제10조 1항—“모든 국민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보안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사회안전법은 국가 보안법, 반공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상범에게 전향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재범할 위험성이 없을 때까지 무한정으로 수감할 수 있게 하는 법이다. 보안처분에는 보호관찰, 주거제한, 보안감호가 있는데 이 중 보안감호는 ‘절대적 부정기형’으로서 사실상의 형벌이었다. 이것은 1936년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과 1941년 치안유지법 3장의 예방구금 제도를 고스란히 승계했다.¹⁶⁾ 보안처분 사법철차를 거치지 않고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는데 2년 단위로 무기한 갇힌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보안처분에서 면제되기 위해서는 반공정신의 확립, 즉 반공주의자가 되겠다는 서약서(시행령 제11조 제1항 1호)를 써야 했다. 이것은 과거

16) 일제 시기 치안유지법상의 사상범 예방구금에서의 ‘현저한 위험’이란 바로 ‘사상전향 거부’였다. 즉,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전향 거부는 일제 시기나 유신체제하에서 동일하게 적용된 셈이었다.

이승만 시절 보도연맹원 가입조건과 같다. 이승만 정권기에는 전쟁이 발발해서 검속한 보도연맹원들을 학살했지만 박정희 정권은 이들을 평생 감옥에 가두어두려 했고, 석방조건은 반공주의자로 확실한 전향을 했다는 증거였다. 즉, 박정희 정권은 사람의 내면까지 통제하여 그것을 확인 받겠다는 태도를 갖고 있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사상범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두더라도 추가적 감시 통제장치를 두겠다는 것이다.

사회안전법 제정과 보안처분을 통해 반국가 인사를 영원히 구금하려는 이유를 말하면서 그들은 그것을 ‘두려움’이라고 표현했다.¹⁷⁾ 사실상의 형벌로서의 보안처분은 일제의 유산이자 동시에 나치시대의 유산이다. 특별예방(개선, 교육)과 이를 통한 사상범의 재사회화란, 사실상 파시즘의 체제유지 이데올로기에 불과했다(배종대, 1989). 그것은 박정희 정권이 감옥에 갇혀 있거나 출옥하더라도 어떤 사회활동도 하기 어려운 장기수, 사상범들을 기존의 형벌로 다스릴 수 없어 보안처분까지 이중 삼중으로 해서 이들을 완전히 통제하에 두거나 폭력으로 전향을 강제할 정도로 허약한 체제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된다. 박정희 등 집권세력이 가진 ‘두려움’, 내부의 ‘적’의 힘에 대한 과대평가는 바로 ‘인혁당 재건위’ 관계자들에 대한 즉각 처형과 이러한 보안처분 조치에서 동일한 양상으로 드러났다.¹⁸⁾

그런데 정치적 반대세력을 ‘절멸’시키려는 체제는 정치적 의지를 가진 지식인, 학생, 사상범에게만 적용된 것은 아니었다. 앞의 1971년 광주대단지 사건 가담 철거민들을 간첩이라고 간주하려 했던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 국민들도 강력한 저항행동을 감행할 경우 간첩에 준하는 존재, 즉 사회적 배제와 격리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당시의 보

17) “사회안전법이 두려워하는 불행은 개인적 불행이 아니라 국가적 불행이므로 이것을 사전에 예방해야 할 필요성은 무엇보다 크다 할 것이다. 인도차이나의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이진후, 1975, 『사회안전법 강해』, 법문사, 3쪽, 심회기, 1989에서 재인용).

18) 사회안전법상의 보안처분 상태를 말함. 서준식은 그래서 헌법상의 기본적인 권조항은 정치권력에 의해 제멋대로 해석될 수 있는 ‘갈보’라고까지 주장했다(서준식, 1989).

통 국민들도 경찰이나 관청 등 권력기관의 눈 밖에 나지 않을까 언제나 전전긍긍했다. 그래서 유신체제 말기에는 관청에서는 물론 모든 조직에서 상부의 지시가 절대적인 명령이 되고,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인권유린”이 각 공장, 학교 등 사회영역에서 초래됐으며,¹⁹⁾ “전체 사회가 거대한 감옥으로 변질되는 현실”²⁰⁾이 나타났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유신체제하에서 50대 이상이었던 한국인들은 1930년대 말 1940년대 초 일제 말 겪었던 전시체제를 것을 두 번 겪는 셈이었다. 물론 일제 말기와 달리 1970년대에는 우선 민족적 차별은 사라졌으며, 1960년대 이후의 공업화, 월남 파병, 중동 붐의 경제적 성과가 어느 정도 두드러졌고, 따라서 이농하여 도시에 정착한 일부 생산직 노동자와 대졸 출신 사무직 노동자들은 분명히 그 성장의 과실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다수의 노동자나 농민은 여전히 그러한 혜택 밖에 있었다. 이 노예적 상황을 견딜 수 없었던 ‘극소수’의 재야인사나 학생들은 저항하지 않을 수 없었고, 저항하는 자들에게는 가혹한 채찍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정말 ‘특별한 사람’이 아닌 보통의 농민이나 노동자들은 일제 전시 동원체제 시기 그러했듯이, 감히 정권에 저항할 수 없었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시기는 물론 그 이후 국가폭력에 희생된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이들이 적으로 지목되어 처벌당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완전히 절망상태에 빠져서 자기 의견을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폭력의 체험과 폭압적 권력에 대한 공포에서 나온 절망은 개인의 충동이나 의욕을 없애는 데 그치지 않고 희생자를 완전 잠식한다(조프스키, 2010: 108). 그것은 사회관계의 파손을 가져온다. 일제 말의 총동원 체험, 유신체제하의 폭력 체험은 단기적으로는 권력에 대한 대중들의 완벽한 굴종을 이끌어낼 수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나 사회에 대한 신뢰를 파괴시키고

19) 사랑방교회 라기화·변복남 교우대표, 1975.5, “호소문”(NCC인권위원회, 1983: 1859에서 재인용).

20) 윤보선 외, 1978.2.24., “3·1민주선언”(NCC인권위원회, 1983: 1909~1910에서 재인용).

정상적인 공동체에 대한 참여의 의지 자체를 박탈한다. 간첩 조작과 조작을 부추기고 합리화하는 위기 담론, 그것에 대한 법제화와 법의 시녀화는 그 사회에 깊은 상처의 흔적을 남긴다.

4. 결론

유신체제는 국제정치적 차원에서의 냉전질서의 이완이 그 질서에 의존했던 국가를 위기에 빠뜨려서 발생했다. 박정권은 반공주의, 국가주의, 민족주의를 강화시켜 정치체 내·외부 간의 경계 짓기를 극대화하고, 조작의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적을 만들어내고, 적의 존재를 통해 내부의 구성원들에게 충성을 요구했다. 적, 즉 공산주의를 악마화하면 할수록 내·외부의 경계는 더욱 엄격해지고, ‘밖’의 사람들이 비인간화되어, 가혹하게 처벌을 받으면 받을수록 안의 사람들도 더욱더 복종적이 될 수 있다.

위기에 빠진 권력이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적을 가시화시키거나 내부에서 의도적으로 적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박정희 정권은 냉전의 이완이라는 위기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평소에 잠재적 적으로 의심했던 사람들을 실질적인 적, 즉 간첩으로 ‘조작’했다. ‘간첩 조작’과 ‘간첩 처형’, 그리고 온 국민적 ‘간첩 색출’ 작업은 서로가 연결되어 있으면서 서로를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간첩은 바로 이웃, 선량한 사람들 중에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간첩, 체제 밖의 존재에 대한 가혹한 폭력의 행사는 “자신은 내부에 있기 때문에 안심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까지도 규율하게 되고, 그들의 내면세계까지 통제하는 효과가 있다. 국가보안법, 반공법, 긴급조치가 내부규율을 법제화한 것이지만 극단적 국가주의, 공포의 조성은 인간의 내면성을 유린한다. 이런 사회에서 모든 사람은 스스로를 사상 검증의 대상으로 삼게 되고, ‘위험한 국민’으로 지목되지 않고 생업에만 충실한 착한 국민으로 보이기 위해 몸조심을 하게 된다. 그것은 시민사회를 극도로 위축시키고 급기야는 정치체의 건강성을

밑으로부터 잠식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유신체제의 경우 그 기본 성격이 일제 말기 전시동원체제를 그대로 모방, 연장한 것이었는데, 모든 것은 국가, 민족, 국민의 이름으로 시행되었고, 정치사회 문제에 관해 개인이 독자적으로 사고하고 의사를 표현할 여지는 거의 없었다. 일제 시기의 천황이라는 상징 대신에 대통령이 법 위에 있었고, 명령이 법을 대신했으며, 공권력의 노골적인 폭력이 법의 이름으로 행사되었다. 전쟁위기를 빌미로 국민들에 대한 사상적 통일성 강요, ‘국민운동’의 이름을 빌린 위로부터의 동원(松本武祝, 2007), 말단까지 연결된 주민 세포 조직을 통한 주민 상호감시, 상명하복의 철저한 관료체제, 공격적인 업적주의와 극단적인 위계질서(노다 마사야키, 2000: 25), 학교의 군사교련과 병영화, 도덕주의, 즉 근검, 절약, 청결, 위생, 질서와 같은 가족 중심, 개인적 가치의 강조 등의 특징을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정치체의 ‘일탈자’를 적으로 간주하면서 통제를 하는 통치 방식은 1987년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간의 적대관계가 지속되는 지금까지 부드러운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 일례로 조용환 변호사의 대법원 판사 선임을 위한 청문회에서 한나라당은 천안함 사건에 대해 ‘확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의 사상을 문제 삼았고, 결국 대법관 임용을 거부했다. 즉, 개인의 사상을 법적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 사상통제는 일제 총독부 지배체제의 유산이며, 유신체제에서 극성을 부렸다가 현재까지 남아 있다. 이것은 국가가 인간의 내면성에 대한 통제의 권리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아가 그것은 개인의 사고와 행동의 자유가 제한됨을 의미한다. 유신 체제를 겪었던 한국의 노년 세대들은 그래서 당국으로부터 부당한 일을 겪어도 권리주장을 하거나 행동하기를 꺼린다.

유신체제의 전쟁 정치, 그리고 ‘적 만들기’ 작업은 미·중 간의 국교정상화와 동서 데탕트라는 예외적인 국제정치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지만, 2001년 9·11 이후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 선포한 것이나 이슬람에 대한 악마화 작업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자본주의 체제는 단지 경제 질서에 대한 정당화만으로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점에서 유신체제의 간첩

조작과 색출, 즉, ‘적과 우리’의 경계 짓기 작업은 예외 상황에만 나타나는 특수현상은 아니며, 따라서 지배질서 일반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2011.10.09 접수; 2011.11.10 심사; 2011.11.30 채택)

참고문헌

- 강창성. 1991, 『일본, 한국 군벌정치』, 해봉문화사.
- 국정원 진실위원회. 2005, 『과거와의 대화, 미래의 성찰: 정치·사법편 2』, 국정원.
- 김근태. 1988, 『남양동』, 중원문화.
- 김동춘. 2000, 『전쟁과 사회—우리에게 한국전쟁은 무엇이었나』, 돌베개.
- _____. 2011, 『냉전, 반공주의 질서와 한국의 전쟁정치』, 《경제와사회》, 통권 제89호.
- 김영순. 1988, 『유신체제의 수립에 관한 연구』, 『오늘의 한국자본주의와 국가』, 한길사
- 김형욱·박사월. 1995, 『김형욱 회고록, 제3부 박정희 왕조의 비화』, 아침.
- 노금노. 2000, 『땅의 아들 1: 어느 농민운동가의 수기』, 돌베개.
- 노나 마사야키. 2000, 『전쟁과 인간—군국주의 일본의 정신분석』, 서혜영 옮김. 길.
- 대통령비서실. 1975, 『박정희 대통령 연설문집』, 제11집.
- 로버트 베로스. 2005, 『독재와 법의 지배—칠레 피노체트 정권에서의 규칙들과 군부세력』, 아담 세보르스키 외, 안규남·송호창 외 역, 2005,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후마니타스.
- 로버트 O. 팩스턴. 2004, 『파시즘—열정과 광기의 정치혁명』, 손명희·최희영 옮김. 교양인.
- 문제안 외. 2005, 『8·15의 기억』, 한길사.
- 배종대. 1989, 『사회안전법 및 보완관찰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과 사회》, 8월.
- 비트포겔, 칼 A. 1981, 『동양적 전제주의—총체적 권력의 비교연구』, 구종서 옮김. 법문사
- 서경원. 2003, 『잃어버린 진실, 함평 고구마 사건』, 《기억과 전망》, 여름호.
- 서준식. 1989, 『나의 주장: 반사회안전법 투쟁기록』, 형성사.
- 손호철. 1995, 『해방 50년의 한국정치』, 새길
- 심희기. 1989, 『사회안전법의 물적 기초』, 계명대학교, 《계명》, 통권 21호.
- 아돌프 히틀러. 2006, 『나의 투쟁』, 이명성 옮김. 홍신문화사.
- 안병욱 외. 2005, 『유신과 반유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역사문제연구소. 2011, 《역사문제연구》, 제25호, 4월호.
- 유신정우회. 1978, 『위대한 전진—유신 6년의 발자취』, 동방도서주식회사.
- 이병천. 2003, 『개발독재의 정치경제학과 한국의 경험』, 『개발독재와 박정희 시대』, 창비.

- NCC인권위원회. 1983, 『1970년대 민주화운동과 기독교』 1, NCC.
- 작크 드라슈. 1987, 『게시타포 광기의 역사: 독재자와 비밀경찰—나치스에서 있어서의 인간연구』, 서석연 옮김. 도서출판 가야.
- 전재호. 2005, 『유신체제의 구조와 작동기제』, 안병욱 외, 앞의 책.
- 조프스키, 볼프강. 2010, 『폭력사회—폭력은 인간과 사회를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한우 옮김. 푸른 숲.
- 조희연. 2010, 『동원된 근대화—박정희 개발동원체제의 정치사회적 이중성』, 후마니타스.
- 진실화해위원회. 2006, 『긴급조치 판결문 분석 보고서』(진실화해위원회, 『2006 하반기 조사보고서』, 진실화해위원회(http://www.jinsil.go.kr/Information_Notice/report/read.asp?num=6&pageno=4&stype=&sval=&data_years=2011&data_month=2008).
- _____. 『2008년도 하반기 조사보고서』, 진실화해위원회(http://www.jinsil.go.kr/appdealing/databoard/app_list.asp)
- _____. 2009, 『청계피복노조 등에 대한 노동기본권 침해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진실화해위원회(http://www.jinsil.go.kr/Information_Notice/report/read.asp?num=32&pageno=2&stype=&sval=&data_years=2011&data_month=)
- 천주교 인권위원회. 『인혁당 재건위사건 재심청구, 상고, 항소이유서 자료집』, 발행연도미상.
- 한상진. 1990, 『제3세계 정치경제와 관료적 권위주의: 종속적 발전에 따른 정치사회의 변화』, 도서출판 한울.
- 홍석율. 『유신체제의 형성』, 안병욱 외 앞의 책.
- 홍성우·한인섭. 2011, 『인권편론 한 시대: 홍성우 변호사의 증언』, 경인문화사.
- 황병주. 2004, 『박정희 체제의 지배담론과 국민의 대중화』, 『대중독재』, 책세상.
- 후지이 다케시. 2011, 『4.19/5.16 시기 반공체제 재편과 그 논리—반공법의 등장과 그 담지자들』,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문제연구》, 제25호, 2011.4.
- Alexander Laban Hinton ed. 2002, *Annihilating Difference- An Antropology of Genocid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Bourdieu, Pierre. 1977, *Outline of a Theory of Pract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ourdieu, Pierre and Loic Wacquant. 1992, *An Invitation to Reflexive Sociolog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Edward Thompson et at. 1982, *Exterminism and the Cold War*, London: New Left Books.

- Erikson, Kai T. 2005, *Wayward Puritans: A Study in the Sociology of Deviance*, Boston: Pearson Education Industry.
- Ron Robin. 2001, *The Making of the Cold War Enemy: Culture and Politics in the Military Industrial Complex*,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松本武祝. 2007, 「戰時期 朝鮮朝鮮人 地方行政職員의 對日協力」, 『支配와 暴力』, 岩波書店.
- 曾薰慧·藏汝興. 2007, 「적기(異己)쓰기-50년대 백색테러시기 비침의 상징분석」, 박강배 옮김. <제노사이드연구>, 제2호.

◆ Abstract ◆

War-politics in Spy-Making- October Yushin as Ruling Order

Kim, Dong-Choon

Park Chung-Hee's Yushin system was conditioned by loosening of the Cold War on which Park's military dictatorship depended. Park proclaimed the 'emergency', paradoxically, in the name of national unification and threatened people to pass the Yushin Constitution. The rhetoric or practice of national emergency legitimized the abnormal execution of political opponents as labeling them 'spys'. This politics of war divided a polity into two polarized group; enemy and friends. Park's Yushin system intentionally fabricated the 'spys' in order to consolidate their power base and safeguarding their political interests. The national campaign of 'spy-hunting' and Intelligence Agency's fabrication of spys was mutually interconnected and reinforced each other. In this society, even the ordinary people who thought themselves as 'innocent citizens' take surveillance on their inner mind.

Keywords: War-politics, Spy-making, October Yushin, Annihilation, Cold War